

■ 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6. 5. 12.>

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(제33조제2항 관련)

1. 시설 기준

- 가.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: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
- 나. 작은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
- 다. 전문도서관(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: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
- 라. 병영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52.2제곱미터 이상일 것

2. 도서관자료 기준

가. 국공립 공공도서관

- 1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: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- 2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: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- 3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: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
나. 작은도서관: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

다.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

- 1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: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- 2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: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- 3)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: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,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

비고: 1. “공공도서관”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.

2. “어린이도서관등”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
3. “공공도서관당 인구 수”란 해당 시·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·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.